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12조(재수강) (생 략) 1 ~ 5 (생략) 6. 기 취득한 과목 중 F학점으로 인하여 재수강코자 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. 7 (생 략)	제12조(재수강) (생 략) 1 ~ 5 (생략) 6. <삭 제> 7 (생 략)	● F학점 성적의 재수강 횟수 제한 삭제
제15조(성적산출) ① 재수강으로 인하여 한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2과목 이상으로 분리 수강 신청하였을 경우, 성적 산출은 분리 수강신청한 성적을 합하여 과목 수로 나눈 값을 성적으로 인정한다. ② ~ ⑥(생 략)	제15조(성적산출) ①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성적증명서에 원래의 성적은 삭제되고, 재수강한 최근의 성적만 인정된다. 다만,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기존 학사경고는 유효하다. ② ~ ⑥(생 략)	● 재수강 성적 처리의 기준 명확화